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9 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정준호·양부남·손명수

민병덕 • 황명선 • 민형배

이연희 · 김성환 · 서삼석

윤후덕 • 임미애 • 안태준

문진석 • 박정현 • 이기헌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,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 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,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 더욱이,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·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사회복

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, 취사용 연료비 및 급식지원 인건비 등 경로당의 공동급식과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	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양곡구
입비 등의 보조) ①・② (생	입비 등의 보조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
	에서 부식비, 취사용 연료비 및
	급식지원 인건비 등 경로당의
	공동급식과 주 5일 점심식사
	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
	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